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69 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김선민·김준형·조 국

이해민 • 신장식 • 김재원

장종태 · 서왕진 · 김원이

박상혁 · 김남희 · 강경숙

정태호 · 이용우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,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.

특히,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 -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, 수술실 내 불법 의료 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 요성이 있음.

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·면제의 법적근거 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의2).

법률 제 호

#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의2제1항 중 "제12조제3항을 위반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
- 2.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
- ③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면제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8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7조의2(벌칙) ① <u>제12조제3항</u>	제87조의2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의</u>
<u>을 위반한</u> 죄를 범하여 사람을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	
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	
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	
처하고,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	
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	
징역에 처하며, 사망에 이르게	
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	
상의 징역에 처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
<u>&lt;신 설&gt;</u>	2.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
	위반한 죄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
	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
	런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	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
	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도
	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
	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
	<u>다.</u>